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없음

2. 변동사항

- 태국 보건부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2017년에 개정된 No.387 고시에 근거 농산물 및 식품에 포함되는 농약 및 화학물질의 잔류량 수치를 조정하여 유해 독성물질 신규 추가 및 기존에 있던 물질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표함.

- 공지일: 2020년 9월 25일

- 적용시점: 2021년 6월 1일(정부관보 게시일 기준)

* [붙임] 태국 보건부 공지 No.419 공지 참고 (No.387에 근거해 일부 추가 및 삭제함)

- Chlorpyrifos, Paraquat 계열 5가지 농약 성분을 유해물질(Hazardous Substances) 리스트에 추가하였으며, 해당 성분이 검출되서는 안됨

* 태국 산업부에서는 '20.5월 공지에 따라 태국 농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paraquat, chlorpyrifos 농약 성분에 대해 유해성 분류 기준에 따라 Level 3(allowable but subject to permission)에서 Level 4(prohibited for production, importation, exportation, and possession)로 격상하여 국내 사용을 금지('20.6.1부터 적용)하였으며, 이번 태국 보건부 개정 공지를 통해 2021.6.1월부터 수입 신선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해서도 적용됨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0.11.16)
- 변동사항 없으며, 기존 샘플검사를 통해 유해물질이 발견된 2개 리스트에 대해 고위험군 품목으로 지정(해당 수출업체를 통해 수입한 품목만 해당됨)

(2020.11.16.기준)

품 목	수출업체	샘플수집일/ 수입일자	분석결과
딸기	GYEONG BUK CORPORATION	19/12/2019	Tebufenpyrad 0.05mg/kg 발견
양배추	SEGILOGIS CO., LTD	5/7/2017	Dimethoate 0.05mg/kg 미만 발견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IV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태국 보건부 공지(No.419) B.E. 2563(2020)
B.E. 2560(387) 식품 잔류 독성물질 허용 수치 개정판
(태국 보건부 2020년 9월 25일 공지)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염 잔류물이 있는 식품에 대한 공중 보건부의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5조 1항, 1979년 식품 권리법 제6조 (2),(3),(9) 항의 개인의 자유에 관한 규정과 태국 왕국 헌법 제33조, 34조, 37조, 40조 과 장관법 제26조는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및 시행할 수 있다.

조항 1

폐지 조항

1. 공중 보건부 고시 서기 2011년 4월 14일 오염 잔류물이 있는 식품 관련(2) 공중 보건부 고시(361) 서기 2013년 8월 6일 오염 잔류물이 있는 식품(2판)

조항 2

식품 규정에 따라 잔류물을 포함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조항 3

"농약 잔류물(pesticide residue)"은 농산물에 유해 물질을 사용하여 야기된 식품의 잔류물을 의미하며 농약 유해 물질 유도체도 포함한다. 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 생성물(conversion products)과 반응 생성물(reaction products)로 만든 대사산물(metabolites) 그리고 오염이 심각한 농업 유해 물질(impurities)에 존재하는 물질이다.

"최대 잔류 허용 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은 밀리그램 단위로 표시되는 농산물 유해 물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품의 최대 잔류량을 의미한다.

"관련이 없는 최대 잔류 허용 기준(Extraneous Maximum Residue Limit: EMRL)"은 이전에 사용된 농업 잔류물이 식량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의 유해 물질 사용은 독성 물질의 특성상 제거의 긴 시간과 태국 환경 때문에 오랫동안 축적되어 사용이 제한된다. 축적된 양은 식품 kg 당 mg 정도의 양이다.

"살충제(pesticide)"는 작물이나 동물의 진균 또는 원치 않는 동식물의 접근을 예방하거나 추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손질, 저장, 유통 등의 과정 또는 동물, 외부 기생충(ectoparasites)의 양을 조절하는 물질, 식물 성장 조절제, 낙엽 차단제, 휴경 화합물, 연화 억제제 또는 운송 중에 농산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확 전 또는 수확 후에 작물에 사용되는 물질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식물 또는 동물 성장 촉진 영양물, 첨가물, 사료 첨가제(feed additive) 및 수의약품(veterinary drug)이 있다.

"기본 한계치(default limit)"는 최대 잔류 허용기준(MRL)을 결정하지 않은 농산물에 함유된 농산물 유해 물질의 잔류량을 의미하며 1kg당 mg 단위로 사용된다.

"오염 잔류물의 유형(definition of residues)"은 오염 잔류물의 유형으로 하나 또는 여러 유형의 조

합일 수 있다.

"유해 물질 유형 4"는 생산, 수입, 수출 또는 소유를 금지하는 유해 물질을 의미하며 불기 2535(서기 1992)에 발행되고 공중 보건부의 유해 물질 목록을 참고한다.

조항 4

유해 물질 조항 서기 1992년 개정된 유해 물질 조항에 대한 고시에 따라 유오염 잔류물을 포함한 식품은 기준에 따라 농업 유해 물질 및 유해 물질 유형 4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기타 농업 유해 물질 외에 이 고시의 마지막에 첨부된 Annex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따라야 한다.

- 1) 이 고시의 Annex 2에 명시된 최대 잔류 허용 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2) 이 고시의 Annex 2에 명시되지 않은 최대 잔류 허용 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은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에 따른 규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3) (1)과 (2) 이외의 경우에는 이 고시의 Annex 3에 명시된 식품의 기본 한도를 제외하고 기본 한계치(default limit)에 따라 1kg당 0.01m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4) 관련이 없는 최대 잔류 허용 기준(Extraneous Maximum Residue Limit: EMRL)은 이 고시의 Annex 4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항 5

기술적 분석 방법은 이 고시의 부록 5에 따라 시행한다.

조항 6

Annex 1번에 명시되어있는 1번부터 82번 이외에 83~87번(밑부분 참고)을 추가한다.

83. Chlorpyrifos
84. Chlorpyrifos-methyl
85. Paraquat
86. Paraquat dichloride
87. Paraquat [bis (methyl sulfate)] or Paraquat methosulfate

조항 7

Annex 2번에 명시되어있는 1번(Chlorpyrifos), 23번(Paraquat)을 삭제한다.

조항 8

Annex 5번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Thai FDA's LOD(Limit of Detection) for Imported Food Products

독성 잔류물의 종류	식품의 종류	mg. / Kg.
1. Chlorpyrifos	신선 채소, 과일 및 다른 식물	0.005
	곡물, 건조 콩	0.01
	고기, 우유, 달걀	0.005
2. Chlorpyrifos-methyl	신선 채소, 과일 및 다른 식물	0.005
	곡물, 건조 콩	0.01
	고기, 우유, 달걀	0.005
3. Paraquat (Paraquat dichloride, Paraquat [bis (methyl sulfate)] , Paraquat methosulfate 포함)	신선 채소, 과일 및 다른 식물	0.005
	곡물, 건조 콩	0.02
	고기, 우유, 달걀	0.005

2020년 9월 25일
아누틴 찬위라꾼
보건부 장관

※ 별첨 : 보건부 공지 No.387 Annex 1~5